

2024년도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

1. 지원사업 절차

① 공고 및 사업신청 2024년 2월	➤	② 지원대상자 선정 2024년 3~4월	➤	③ 지원대상자 서류제출 및 검토 2024년 4~5월	➤	④ 사업진행 및 보조금 지급 2024년 5월 ~ 12월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. 신청방법

가. **신청기간** : 2024년 2월 2일(금) ~ 2024년 2월 29일(목)

※ 접수기간 내 선정자 미달 시 우선순위가 아닌 선착순 접수 권을
관련법 규정 검토 후 선정 예정

나. 신청서류

-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

(단,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첨부)

다. 신청방법 : 남동구청 교통행정과(방문·등기 우편 접수)

3.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

가. 신청접수 후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(관련법, 선정기준 등) 실시

나.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액 확정 및 공사 시행

다. 공사완료에 따른 현장 확인 후 보조(지원금) 지원

4. 문의처

- 남동구청홈페이지_남동구 고시/공고_2024년도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참조

-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(☎032-453-2683)

- 2024년도 그린파킹(Green Parking) 사업 - 보조금 지원 안내

그린파킹(Green Parking) 사업이란?

‘녹색주차마을 사업’이라고도 불리는 그린파킹(Green Parking)은 주택가의 차량소유주가 직접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, 방범 시설 등의 설치와 녹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□ 지원대상

-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설치 가능한 단독(다가구)주택, 다세대주택
- 법정 주차면 외 추가로 주차구획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가 필요한 주택

□ 지원내용 및 금액

구 분	지 원 내 용	지 원 금 액	비 고
개별주택 (단독, 연립, 다세대)	· 담장(대문) 철거 · 개방형(투시형) 담장 및 대문 · 주차면 조성 · 조경시설, 방범시설	· 1면 650만원 · 2면 750만원 · 3~10면 : 추가 1면당 100만원 범위 내 · 최대 1550만원	· 설치비(공사비) 100% · 당해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보조금 지급기준 따름

○ 의무이행기간 :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타 용도 사용, 철거 후 건물 신축 시 보조금 회수
[주차장 5년 이상 사용 이행각서 작성 후 미이행 시 지원 보조금 환수조치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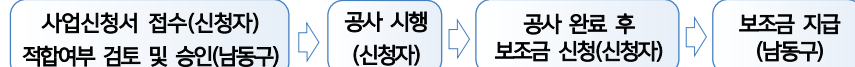


설 치 전

설 치 후

□ 신청방법 : 서면 접수(등기), 방문신청 (문의: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☎453-2683)

□ 추진절차



- 2024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- 보 조 금 지 원 안 내

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란?

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건축물의 이용시간별 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주차장 정비공사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□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

지원대상	시설지원내용	지원금액
《시설개선비》 주차장 5면 이상, 3년 개방 가능한 건축물 (공공기관 제외)	·주차 노면표시 정비 - 주차구획, 안내 노면 표시 등 ·카스트퍼, CCTV, 출입구 차단시설 등 ·주차장개방 안내 표지판 ·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시설물설치 ·기타방범시설	○ 시설개선비(최초지원) ·설치비(공사비) 100% ·5면 개방 시 : 750만원 지원 ·5면 초과 시 : 초과면당 30만원 (최대 3,000만원) ○ 시설개선비(재개방) · 700만원
《운영보전금》 주차장 5면 이상, 2년 개방 가능한 건축물 (공공기관 제외)	-	·월 2만원/면 (최대 60면)

- 기증개방시간 : 평일·토요일 19시~익일 7시, 일요일·공휴일 24시간
- 개방시간은 건축물 사용(또는 영업)시간 외 유휴시간에 따라 남동구청장(교통행정과)과 협의로 조정 가능
- 의무개방기간 : 3년(시설개선비), 2년(운영보전금) 미이행 시 지원 보조금 환수 조치

□ 신청방법 : 서면 접수(등기), 방문신청 (문의: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☎453-2683)

□ 추진절차



- 2024년도 아파트 주차장 추가설치 지원 사업 - 보 조 금 지 원 안 내

아파트 주차장 추가설치 지원 사업이란?

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차난 해소와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.12.17.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로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, 아파트 내 주차장을 추가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
- 지원대상 ①, ② 모두 충족하는 대상에 한함
 - ① 2013.12.17.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 - ②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, 조경시설,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
- 지원내용 : 주차장 포장 보수, 주차 노면표시 정비, Car Stopper 설치 등
- 지원금액 : 주차 1면당 50만원
단지 당 최대 3,000만원까지 지원(인천시 보조금 지급 기준)
- ※ 제외대상 및 제외사항
 - 도시개발사업(재개발)에 포함된 공동주택단지
 - 지하주차장 내 빈공간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주차면 증설하는 사항

□ 의무이행 기간(5년)

-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타 용도 사용 시 지원 보조금 환수
- 주차장 설치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5년 이내에 주차장 폐쇄 시 보조금 환수
- ※ 주차장 5년 이상 사용 이행각서 작성 후 미 이행 시 지원 보조금 환수조치

□ 신청방법 : 서면 접수(등기), 방문신청 (문의: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☎453-2683)

□ 추진절차

- ① 신청서 접수 및 처리(교통행정과) ➡ ② 행위허가필증(공동주택과)
- ➡ ③ 부설주차장 확충공사 시행 ➡ ④ 검사필증(공동주택과)
- ➡ ⑤ 보조금지급 신청서 제출(교통행정과) ➡ ⑥ 지급결정통보(교통행정과)

- 2024년도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- 보 조 금 지 원 안 내

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란?

원도심 내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하고자 주차면 추가 설치 등 개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
- 지원대상 : 10면 이상 주차장 개방사업을 신청한 초·중·고등학교
- 지원내용 : 주차시설, 방법시설, 안전시설, 주차면 추가 설치 등
- 지원방식 : 자치구 직접공사 시행(용역 등)
- 지원금액

구분	최대 지원금액	비고
최초지원	10면 ~ 19면	100백만원
	20면 ~ 39면	200백만원
	40면 이상	300백만원
재개방	20백만원	당해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보조금 지급기준 따름

□ 의무이행 기간

- 주차장 개방 협약기간 이내 타 용도 사용 시 지원 보조금 환수

□ 신청방법 : 서면 접수(등기), 방문신청 (문의: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☎453-2683)

□ 추진절차

- 최초지원
 - ① 신청서 접수 및 처리(교통행정과) ➡ ② 협약체결(남동구↔학교)
 - ➡ ③ 부설주차장 공사 시행(자치구) ➡ ④ 준공 후 개방

- 2024년도 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- 보 조 금 지 원 안 내

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이란?

원도심 내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종료 사업지, 소규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에 주차공유 플랫폼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공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
- 지원대상 : 주차공유 서비스 운영사와 계약하여 1년간 주차공유 플랫폼 기능유지 가능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종료 사업지, 소규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
 - * 집합건물일 경우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 제출 필요
- 지원내용 : (lot센서) 번호인식 cctv, 진·출입 차단기 등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사항
- 지원금액

지 원 내 용	지 원 금 액	비 고
· (lot센서) 번호인식 cctv, 진·출입 차단기 등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사항	· 1면 150만원 · 2면 300만원 · 3~20면 : 추가 1면당 150만원 범위 내 · 최대 3,000만원	당해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보조금 지급기준 따름
· (주차시설) 주차시설, 방법시설 등 기타 주차공유에 필요한 사항		

○ 의무이행기간 : 주차장 설치 후 1년간 플랫폼 기능을 유지 못하는 경우 지원 보조금 환수
[이행각서 작성 후 미이행 시 지원 보조금 환수조치]

□ 신청방법 : 서면 접수(등기), 방문신청 (문의: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☎453-2683)

□ 추진절차

